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 및 지급액 상향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98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3298호)

가.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5. 9. 25.

다. 회 부 일 : 2025. 9.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안 제4조제1항 등)

- 개정안은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u>10만</u> 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u>13세</u> ----- ----- <u>15만원</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 ----- ----- ----- <u>13세</u> -----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② ----- ----- -----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 사항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조 5,681억원임.

<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2024년	234	21,114	27,946
2025년	215	19,588	25,681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 아울러, 정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¹⁾를 도입하여 2025년 기준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22년 <영아수당>	월평균 15.1	3,731	5,419
2023년 <부모급여>	월평균 32.3	16,214	23,622
2024년 <부모급여>	월평균 47.2	28,887	42,267
2025년 <부모급여>	월평균 43.8	21,353	30,743

* 자료 : 보건복지부

*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

* 서울 35%, 지방 65% 차등보조 ±10%

□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을 보면, 지급 연령의 경우 2018년 6세 미만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7세 미만, 2022년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급액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만원으로 동일함.

<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 >

확대 시기	2018. 9	2019. 9.	2022. 4.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 미만	7세 미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액	10만원	10만원	10만원

1)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단계적 확대)

- 현재의 제도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아동의 기본 권리 및 복지 증진이라는 아동수당의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도 함. 또한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 >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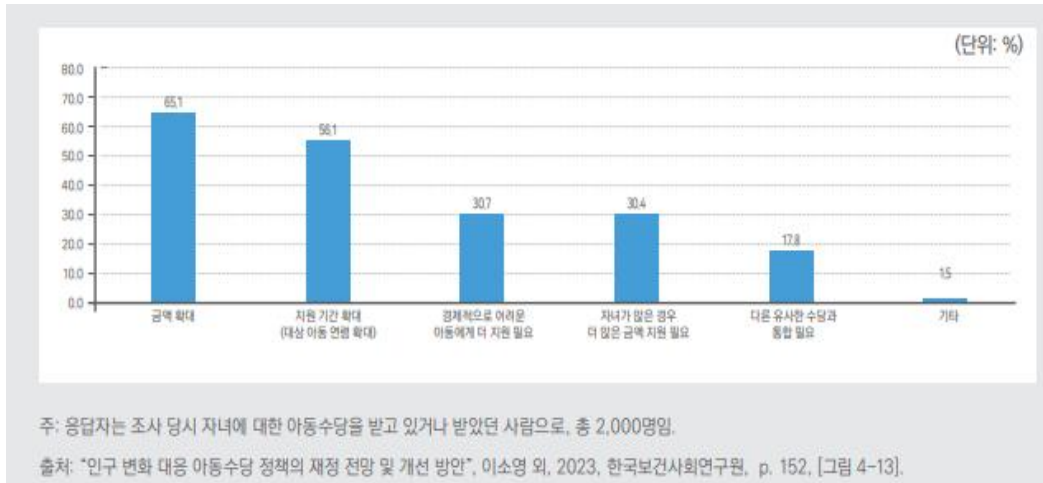
자녀 관련 지출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사교육비 포함	60.6	78.5	91.9
사교육비 제외	51.7	35.8	41.3

자료 : 보건복지부(「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p.269~p.2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13세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연령 확대에 따른 전체 아동의 복리 증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응답한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중복 응답)에서는 금액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기간 확대(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²⁾.

2) 이소영,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44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5. 27.

<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



□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5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7개국이고, 17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8개국임.

< OECD 아동수당 도입 국가의 연령 구분> ('24. 12. 기준)

지급연령	국가수	국가명
8세 미만	1	한국
15세 이하	7	<u>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영국, 스위스</u>
17세 이하	20	핀란드(16세), <u>헝가리(16세), 포르투갈(16세), 체코(16세)</u> 독일,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u>이탈리아</u> , 노르웨이, <u>룩셈부르크</u> ,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u>오스트리아, 그리스</u> , 슬로베니아, <u>칠레</u>
18세 이상	3	일본(18세), <u>에스토니아(18세), 프랑스(19세)</u>
합계	31	

* ‘_’ 국가는 학생, 직업훈련 등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지원연령을 확대하는 국가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을 보면, 스웨덴은 월 약 18만 3,900원, 독일은 월 약 39만 9,300원, 영국은 약 19.5만원 등을 지급 중임.

< OECD 주요국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 >

국 가	지 급 액	원화 환산액 (‘25.4월 환율기준)
스웨덴	월 1,250 크로나	월 183,900원
독 일	월 250 유로	월 399,300원
영 국	(첫째) 주 25.6 파운드 (둘째 이상) 주 16.95 파운드	주 48,800원 (4주: 195,300원) 주 32,300원 (4주: 129,300원)
캐나다	(6세 미만) 연 최대 6,833 달러(월 583 달러) (6~17세) 연 최대 5,903 달러(월 492 달러)	월 665,200원 월 561,300원
일 본	(0~2세) 첫째·둘째 15,000엔, 셋째 이상 30,000엔	월 147,800원, 월 295,600원
	(3세~고등학생) 첫째·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30,000엔	월 98,500원, 월 295,600원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우리 위원회에는 지급연령 확대 및 지급액 상향 등 아동수당 확대 등과 관련한 15건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바, 아동수당 확대의 입법정책적 필요성 외에도 상당 규모의 재정 수반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음.

< 아동수당 확대 등 관련 법안 계류 현황 >

구 분	내 용	개정안
지급연령	13세 미만	이용우의원안
	18세 미만	전진숙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장종태의원안 남인순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용혜인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황정아의원안 강선우의원안 서영교의원안 황명선의원안
	19세 미만	박민규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지급액	월 20만원	전진숙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월 30만원	이수진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월 50만원	박성준의원안(부모급여 삭제)
출생 순위 차등 지급	남인순의원안·황명선의원안	
물가변동을 반영	김태년의원안·장종태의원안	
인구감소지역 등 추가지급	박정의원안·서영교의원안·이용우의원안	
기타	·자녀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최대10만원) 추가(강선우의원안)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추가(황명선의원안) ·자녀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한병도의원안): 8세 미만 월 10만원, 8세~18세 미만 월 20만원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 및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대규모 재정소요와 타 양육지원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아동에 1만원, 특별지역 거주아동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 및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대규모 재정소요와 타 양육지원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세씩 연령 상향,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아동에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 2만원 추가 지급,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 시 1만원 추가 지급
기획재정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국정위 등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既발표 - 추가적인 금액·대상 확대는 중앙정부·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소요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현금성 급여 등을 지급 중인 만큼 신중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양육비 부담 경감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금액·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취지에 공감
지자체	- 경기·충북·충남·경남: 재정자립도가 낮고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겪고 있으므로, 점진적 지급 대상 확대 또는 전액 지원 등 보조율 확대 요청 - 전남: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목적으로 아동수당 확대에 동의

문 의 처

02)6788-5500